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11호 2019. 12. 18. (수)

##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19-251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3
- 정선군 고시 제2019-252호 정선(사북) 군계획시설(주차장 22호)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5
- 정선군 고시 제2019-254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7
- 정선군 고시 제2019-256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방수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8
- 정선군 고시 제2019-258호 정선(남면) 군계획시설(도로 : 소로2-4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12
- 정선군 고시 제2019-259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14

- 정선군 고시 제2019-263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15

##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9-1293호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16
- 정선군 공고 제2019-1306호 정선 군관리계획(모평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안) 공람·공고.....19
- 정선군 공고 제2019 - 1313호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3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19-251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연구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결정하고,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2월 6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 정선군 지역사회 체육개발 진흥과 야구동호인의 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적 여건을 마련하고, 관내 부족한 체육시설 수요를 충족하여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및 사회 스포츠 거점 형성 연구기관 유치 확정에 따라 관내 유휴시설인 폐교(함백중고등학교)를 활용한 원활한 사업추진 여건 마련

나. 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체육시설	야구장	신동읍 조동리 260-4 번지 일원	-	증)22,935	22,935	금 회	

■ 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설</li> <li>- A:22,93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선군 지역의 사회체육개발 증진과 야구동호인 활동을 지원할 공간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li> </ul>

(2) 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연구시설	신동읍 조동리 263-11번지 일원	-	증)9,977	9,977	금 회	

■ 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연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설</li> <li>- A:9,97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기관 유치가 확정되어 폐교(함백중고등 학교) 시설을 활용한 사업추진여건 마련을 위하여 군 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li> </ul>

정선군 고시 제2019-252호

정선(사북) 군계획시설(주차장 22호)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정선군 고시 제2016-25호(2016. 4. 15)로 결정 고시된 정선(사북) 군계획시설(주차장 22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6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7-169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정선(사북) 군계획시설(주차장 22호) 조성사업
- 명 칭 : 사북읍사무소 북 주차장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단위 : m<sup>2</sup>)

시설명	도 시 계 획 결 정		실 시 계 획 인 가			비 고
	세부시설명	면적·규모	기시행	금회시행	향후계획	
주차장	사북읍사무소 북 주차장	A=1,302m <sup>2</s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1,191m<sup>2</sup></li> <li>■ 변경 910m<sup>2</sup> 감)281m<sup>2</sup></li> </ul>	-	정선군고시 제2016-25호 (2016.4.15.)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사업기간(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 ~ 2019. 12. 31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자.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1) 토지 조서

(단위 : m<sup>2</sup>)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합 계				2,740	910					
1	사북리	317-195	대	91	79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2	사북리	317-196	대	233	190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3	사북리	317-197	대	130	89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4	사북리	317-169	대	272	243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5	사북리	317-178	대	287	286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6	사북리	317-47	전	14	7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7	사북리	317-26	대	1,624	11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8	사북리	317-200	도	89	5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 2) 지장물 조서

(단위 : m<sup>2</sup>)

번호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사북리	317-178	가옥	스레트 및 벽돌	m <sup>2</sup>	92.00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2	사북리	317-196	창고	스레트 및 벽돌	m <sup>2</sup>	20.00	미국 뉴저지주	김종승	-	-	-
3	사북리	317-196	창고	스레트 및 벽돌	m <sup>2</sup>	5.00	미국 뉴저지주	김종승	-	-	-

정선군 고시 제2019-254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강원도고시 제2019-456호로 결정(변경) 고시한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2월 13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 정선군 수도정비기본계획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따라 수도 시설 폐지인가(강원도고시 제2014-463호, 2014. 10. 31) 완료된 지방상수도시설 (북일정수장)에 대하여 결정 목적을 상실한 군계획시설을 해제하여 향후 시설 철거·정비를 통한 공공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나.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유통 및 공급시설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0	수도공급설비	북일정수장	사북읍 사북리 98-1번지 일원	7,206	감)7,206	-	정선군 고시 제2010-96호 (2010. 7. 9.)	-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	수도공급설비	◦ 폐지 - 면적 : 7,206m <sup>2</sup>	◦ 정선군 수도정비기본계획상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기존 노후된 지방상수도 정수시설의 폐지 계획에 따라 수도 시설 폐지인가(강원도고시 제2014-463호, 2014. 10. 31) 완료된 지방상수도시설(북일정수장)에 대한 군계획시설 해제

정선군 고시 제2019-256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방수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방수설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2월 13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취지 : 북평면 도시지역 내 『지적재조사에 의한 특별법』에 의거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완료함으로써 군계획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도모코자 함.

나.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일원

다.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방수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북평도시지역

1) 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금회 변경사항)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sup>2</sup> )	노선수	연장(m)	면적(m <sup>2</sup> )	노선수	연장(m)	면적(m <sup>2</sup> )	노선수	연장(m)	면적(m <sup>2</sup> )	
합계	기정	13	4,855	63,458	-	-	-	9	3,444	48,189	4	1,411	15,269
	변경	13	4,855	61,270	-	-	-	9	3,444	46,596	4	1,411	14,674
중로	기정	6	3,761	54,756	-	-	-	4	2,616	41,112	2	1,145	13,644
	변경	6	3,761	53,276	-	-	-	4	2,616	40,192	2	1,145	13,084
소로	기정	7	1,094	8,702	-	-	-	5	828	7,077	2	266	1,625
	변경	7	1,094	7,994	-	-	-	5	828	6,404	2	266	1,590

※ 변경 13개소

##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5	보조간선 도로	1,330	중로1-1 북평리149-51전	중로1-1 북평리781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1986-67호 (1986.06.07)	
변경	중로	2	1	15	보조간선 도로	1,330	소로1-7 북평리149-33제	소로1-7 북평리775-1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1986-67호 (1986.06.07)	선형변경
기정	중로	2	2	15	보조간선 도로	445	중로1-1 북평리727-3전	완충녹지1 북평리665-7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1986-67호 (1986.06.07)	
변경	중로	2	2	15	보조간선 도로	445	소로1-7 북평리715도	완충녹지1 북평리665-7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1986-67호 (1986.06.07)	선형변경
기정	중로	2	4	15	보조간선 도로	380	중로 1-2 북평리 521-20도	중로2-1 북평리 696-23대	일반 도로	북평 복지 회관	강원도고시 1986-67호 (1986.06.07)	
변경	중로	2	4	15	보조간선 도로	380	중로 1-2 북평리 521-10도	중로2-1 북평리 695-2도	일반 도로	북평 복지 회관	강원도고시 1986-67호 (1986.06.07)	선형변경
기정	중로	2	6	15	보조간선 도로	461	중로1-1 북평리811-2답	중로2-1 북평리764전	일반 도로	두부 공장	정선군고시 2003-42호 (2003.05.09.)	
변경	중로	2	6	15	보조간선 도로	461	소로1-7 북평리810-4도	중로2-1 북평리764-3전	일반 도로	두부 공장	정선군고시 2003-42호 (2003.05.09.)	선형변경
기정	중로	3	1	12	집산도로	370	중로1-1 북평리179-94도	소로1-2 북평리250-21철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1986-67호 (1986.06.07)	
변경	중로	3	1	12	집산도로	370	소로1-7 북평리179-71제	소로1-2 북평리250-21공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1986-67호 (1986.06.07)	선형변경
기정	중로	3	2	12	집산 도로	775	중로 1-1 북평리 149-51전	중로 2-2 북평리 665-10전	일반 도로	북평면 사무소	강고제67호 (86.6.7)	
변경	중로	3	2	8 ~12	집산 도로	775	중로2-1 북평리 149-33제	중로 2-2 북평리 665-7도	일반 도로	북평면 사무소	강고제67호 (86.6.7)	선형 및 폭원변경
기정	소로	2	10	8	국지 도로	54	중로 3-2 북평리 246-6답	소로 1-2 북평리 245-4답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1986-67호 (1986.06.07)	
변경	소로	2	10	8	국지 도로	54	중로 3-2 북평리 246-6도	소로 1-2 북평리 245-8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1986-67호 (1986.06.07)	선형 및 모퉁이 변경
기정	소로	2	11	8	국지 도로	110	중로 2-1 북평리 198답	중로 3-2 북평리 684-55답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1986-67호 (1986.06.07)	
변경	소로	2	11	8	국지 도로	110	중로 2-1 북평리 198답	중로 3-2 북평리 684-55답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1986-67호 (1986.06.07)	선형변경
기정	소로	2	12	8	국지 도로	198	중로 2-1 북평리 696-13도	소로 1-2 북평리 682-1철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1986-67호 (1986.06.07)	
변경	소로	2	12	8	국지 도로	198	중로 2-1 북평리 696-13도	소로 1-2 북평리 683-4답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1986-67호 (1986.06.07)	선형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7	8	국지 도로	116	중로 2-1 북평리 696-14도	소로 2-19 북평리 702-11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1986-67호 (1986.06.07)	
변경	소로	2	17	8	국지 도로	116	중로 2-1 북평리 696-14도	소로 2-19 북평리 702-11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1986-67호 (1986.06.07)	선형변경
기정	소로	2	28	8	국지 도로	350	중로 2-2 북평리 703-6전	중로 2-1 북평리 780-6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1986-67호 (1986.06.07)	
변경	소로	2	28	6~8	국지 도로	350	중로 2-2 북평리 703-6도	중로 2-1 북평리 780-6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1986-67호 (1986.06.07)	선형변경 및 폭원축소
기정	소로	3	13	6	국지 도로	72	중로 1-1 북평리 179-21대	소로 2-19 북평리 702-5대	일반 도로	-	정선군고시 2003-42호 (2003.05.09)	
변경	소로	3	13	6	국지 도로	72	소로 1-7 북평리 186-1도	소로 2-19 북평리 702-11도	일반 도로	-	정선군고시 2003-42호 (2003.05.09)	선형변경
기정	소로	3	21	6	국지 도로	194	중로2-4 북평리 686-11도	중로3-1 북평리 250-22철	일반 도로	-	정선군고시 제96호 (10.07.09.)	
변경	소로	3	21	6	국지 도로	194	중로2-4 북평리 686-11도	중로3-1 북평리 250-24답	일반 도로	-	정선군고시 제96호 (10.07.09.)	선형변경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중로2-1	중로2-1	◦ 선형변경 ◦ B=15m, L=1,330m	◦ 북평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도로 선형변경
변경	중로2-2	중로2-2	◦ 선형변경 ◦ B=15m, L=445m	◦ 북평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도로 선형변경
변경	중로2-4	중로2-4	◦ 선형변경 ◦ B=15m, L=380m	◦ 북평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도로 선형변경
변경	중로2-6	중로2-6	◦ 선형변경 ◦ B=15m, L=461m	◦ 북평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도로 선형변경
변경	중로3-1	중로3-1	◦ 선형변경 ◦ B=12m, L=370m	◦ 북평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도로 선형변경
변경	중로3-2	중로3-2	◦ 선형 및 폭원변경 ◦ B=12m→8~12m, L=775m	◦ 북평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도로 선형 및 폭원변경
변경	소로2-10	소로2-10	◦ 선형 및 모퉁이 변경 ◦ B=8m, L=54m	◦ 북평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도로 선형 및 도로모퉁이 변경
변경	소로2-11	소로2-11	◦ 선형변경 ◦ B=8m, L=110m	◦ 북평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도로 선형변경
변경	소로2-12	소로2-12	◦ 선형변경 ◦ B=8m, L=198m	◦ 북평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도로 선형변경
변경	소로2-17	소로2-17	◦ 선형변경 ◦ B=8m, L=116m	◦ 북평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도로 선형변경
변경	소로2-28	소로2-28	◦ 선형변경 및 폭원축소 ◦ B=8m→6~8m, L=350m	◦ 북평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도로 선형변경 및 폭원축소
변경	소로3-13	소로3-13	◦ 선형변경 ◦ B=6m, L=72m	◦ 북평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도로 선형변경
변경	소로3-21	소로3-21	◦ 선형변경 ◦ B=6m, L=194m	◦ 북평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도로 선형변경

2) 방재시설

- 방수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북평배수펌프장	북평면 북평리 737번지 일원	2,450	감) 30	2,420	정선고제96호 (10.07.09.)	

- 방수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북평배수펌프장	◦ 면적변경 - A=2,450㎡→2,420㎡, 감)30㎡	◦ 북평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북평배수 펌프장면적 변경

라.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방수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

정선군 고시 제2019-258호

정선(남면) 군계획시설(도로 : 소로2-4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강원도 고시 제108호(1991. 9. 06)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남면) 군계획시설(소로2-4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정선군 남면 무릉리 624-20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정선(남면) 군계획시설(소로2-4호선) 사업
- 2) 명 칭 : 정선(남면) 군계획시설(소로2-4호선) 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연장·폭원	기시행(09.12.18)	금회시행	
도로	소로 2-4호선	L=220.0m, B=8.0m	L=62.0m, B=8.0m	L=89.6m, B=8.0m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
- 2)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사업기간

- 1)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 2) 준공예정일 : 2020.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남면 무릉리	624-20	전	595.0	595	봉양3길21	정선군	-	-	-
2	남면 무릉리	625-1	도	5,050	122	봉양3길21	정선군	-	-	-
3	남면 무릉리	645-10	전	41	41	봉양3길21	정선군	-	-	-
계		3필지		5,686	758					

정선군 고시 제2019-259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의 멸실로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정 선 군 수

○ 도로명주소 폐지

연번	도로명주소	폐 지 일	폐지사유	비 고 (관련지번)
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595	2019.12.6	건물 멸실	정선읍 광하리 91-11
2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관음동길 160	“	건물 멸실	정선읍 봉양리 539
3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4길 52-12	“	건물 멸실	정선읍 봉양리 52-15
4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1길 100-53	“	건물 멸실	신동읍 조동리 480-24
5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눈꽃마을길 397-7	“	건물 멸실	임계면 직원리 530-16
6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마상길 42-1	“	건물 멸실	임계면 가목리 105-7
7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말루길 110-10	“	건물 멸실	임계면 봉산리 산151-2
8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장찬동길 105-9	“	건물 멸실	임계면 송계리 352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민원과(☎560-218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고시 제2019-263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의 멸실로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정 선 군 수

○ 도로명주소 폐지

연번	도로명주소	폐 지 일	폐지사유	비 고 (관련지번)
1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함백로 60-21	2019.12.13	기존 건물 멸실	신동읍 예미리 196-3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민원과(☎560-218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9-1293호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이내에 이해 당사자들은 이의신청 등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9일

정 선 군 수

- 1. 공 고 명 :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 2. 대 상 지 : 15개소,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78-19임 외 27필지
- 3. 지정사유 : 산사태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4. 공고기간 : 2019. 12. 09 ~ 2019. 12. 28(20일)
- 5. 이의신청 : 공고기간내
  - 가. 접 수 처 : 정선군청 산림과(☎033-560-2427)
  - 나. 신청양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치 제16호의2
- 6. 지정 예정일 : 2019. 12월중(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 7.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정선군청 산림과에 방문 열람 가능)
- 8.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사항 : 붙임과 같음
- 9. 경과조치 : 위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
-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산림과(☎033-560-24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법」 발취

제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2.2.22]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54조의2(벌칙) 제45조의10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신설 2012.10.23>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사진(컬러)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주소	전화번호	
	직업(소속)	전자우편주소	

신청 이유		
지정 예정지	소재지	
	면적	m <sup>2</sup>
이의신청 면적		m <sup>2</sup>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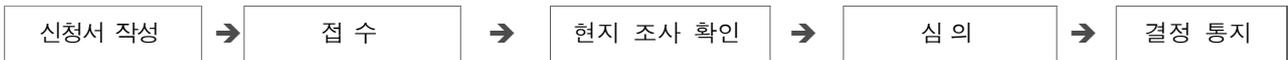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 음
------	--------------	------------

####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 리 기 관: 지역산사태예방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210mm×297mm[백상지 80g/ m<sup>2</sup>(재활용품)]

정선군 공고 제2019-1306호

정선 군관리계획(모평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1. 강원도고시 제2007-197호 (2007.09.21.)로 최초 결정되어 강원도고시 제 2007-241호(2007.11.09.)로 조성계획 승인, 정선군 고시 제2015-60호 (2015.08.04.)로 조성계획 변경 승인된 모평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11일

정 선 군 수

1. 공람목적 : 정선군 군관리계획(모평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2. 모평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안)
  - 가. 공원명 : 모평문화공원
  - 나.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6번지 일원
  - 다. 면 적 : 119,830㎡(변경없음)
  - 라.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구 분	부지면적(㎡)			건축물									비고	
				동수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19,830	-	119,830	18동	감)6동	12동	2,019	감)271	1,748	2,401	감)134	2,267		
시설 용 지	소 계	53,660	감)601	53,059	18동	감)6동	12동	2,019	감)271	1,748	2,401	감)134	2,267	
	휴양시설	15,135	감)618	14,517	-	-	-	-	-	-	-	-	-	
	운동시설	1,169	-	1,169	-	-	-	-	-	-	-	-	-	
	교양시설	13,471	증)400	13,871	1동	증)3동	4동	471	증)467	938	471	증)986	1,457	
	편익시설	10,881	감)2,102	8,779	13동	감)9동	4동	874	감)738	136	1,256	감)1,120	136	
	공원관리시설	13,004	증)712	13,716	4동	-	4동	674	-	674	674	-	674	
	조경시설	-	증)1,007	1,007	-	-	-	-	-	-	-	-	-	
녹 지	66,170	증)601	66,771	-	-	-	-	-	-	-	-	-		

마. 세부시설계획 변경(안)

구 분	기 호		위 치	부지면적(m <sup>2</sup> )			건축물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바닥면적(m <sup>2</sup> )			연면적(m <sup>2</sup>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	119,830	-	119,830	2,019	감)271	1,748	2,401	감)134	2,267			
계	-	-	-	53,660	감)601	53,059	2,019	감)271	1,748	2,401	감)134	2,267			
휴양 시설	야유회장	a	a	16	4,842	감)101	4,741	-	-	-	-	-			
	쉼터	b	-	지구내	538	감)538	-	-	-	-	-	-	폐지		
	정자	-	b	16	-	증)21	21	-	-	-	-	-	신규		
	야영장	c	c	16	9,755	-	9,755	-	-	-	-	-	변경없음		
	소계	-	-	-	15,135	감)618	14,517	-	-	-	-	-			
운동 시설	다목적운동장	d	d	16	1,169	-	1,169	-	-	-	-	-	변경없음		
	소계	-	-	-	1,169	-	1,169	-	-	-	-	-			
교양 시설	온실	e	-	16	1,804	감)1,804	-	471	감)471	-	471	감)471	-	폐지	
	목재문화체험관	-	e-1	16	-	증)866	866	-	증)831	831	-	증)1,350	1,350	신규	
	목공체험실	-	e-2	13	-	증)122	122	-	증)60	60	-	증)60	60	신규	
	야외교육장	-	e-3	13	-	증)497	497	-	-	-	-	-	-	신규	
	목공전시관	-	e-4	13	-	증)36	36	-	증)32	32	-	증)32	32	신규	
	트리하우스	-	e-5	16-6	-	증)36	36	-	증)15	15	-	증)15	15	신규	
	산림교육장	-	e-6	16-6	-	증)104	104	-	-	-	-	-	-	신규	
	목재놀이터	-	e-7	16	-	증)439	439	-	-	-	-	-	-	신규	
	허브원	f	f	16	3,432	증)68	3,500	-	-	-	-	-	-		
	생태습지원	i	i	16	6,132	-	6,132	-	-	-	-	-	-	변경없음	
	관찰데크	j	j	16	543	-	543	-	-	-	-	-	-	변경없음	
	탐방로	k	k	지구내	1,560	증)36	1,596	-	-	-	-	-	-		
	소계	-	-	-	13,471	증)400	13,871	471	증)467	938	471	증)986	1,457		
편익 시설	진망대	-	g	16-6	-	증)36	36	-	-	-	-	-	-	신규	
	휴게음식점	l	l	16	2,484	감)2,384	100	774	감)738	36	1,156	감)1,120	36		
	주차장1	m	m-1	16	4,890	-	4,890	-	-	-	-	-	-	변경없음	
	주차장2	m	m-2	7-1	3,156	-	3,156	-	-	-	-	-	-	변경없음	
	주차장3	-	m-3	16-3	-	증)226	226	-	-	-	-	-	-	신규	
	주차장4	-	m-4	16-5	-	증)20	20	-	-	-	-	-	-	신규	
	화장실 및 샤워장	n	n	16	228	-	228	70	-	70	70	-	70	변경없음	
	실내취사장	o	o	16	123	-	123	30	-	30	30	-	30	변경없음	
	소계	-	-	-	10,881	감)2,102	8,779	874	감)738	136	1,256	감)1,120	136		
	공원 관리 시설	태양광패널1	-	h-1	16	-	증)241	241	-	-	-	-	-	-	신규
태양광패널2		-	h-2	16-3	-	증)841	841	-	-	-	-	-	-	신규	
장고		p	p	16-5	120	-	120	70	-	70	70	-	70	변경없음	
비지터센터		q	q	16-5	2,037	증)93	2,130	556	-	556	556	-	556		
입구광장1		r	r-1	16	426	-	426	-	-	-	-	-	-	변경없음	
입구광장2		-	r-2	16	-	증)474	474	-	-	-	-	-	-	신규	
입구광장3		-	r-3	16-6	-	증)223	223	-	-	-	-	-	-	신규	
배수지		s	-	16-3	723	감)723	-	-	-	-	-	-	-	폐지	
오수처리장		t	t	16	230	-	230	-	-	-	-	-	-	변경없음	
급수시설		u	u	7-3	1,975	-	1,975	-	-	-	-	-	-	변경없음	
관리사무소		v	v	16	78	-	78	48	-	48	48	-	48	변경없음	
도로		-	-	지구내	5,133	감)974	4,159	-	-	-	-	-	-	-	
보도		-	-	지구내	2,282	증)537	2,819	-	-	-	-	-	-	-	
소계	-	-	-	13,004	증)712	13,716	674	-	674	674	-	674			
조경 시설	잔디밭1	-	s-1	13	-	증)282	282	-	-	-	-	-	-	신규	
	잔디밭2	-	s-2	16-6	-	증)69	69	-	-	-	-	-	-	신규	
	테크길1	-	w-1	16-6	-	증)184	184	-	-	-	-	-	-	신규	
	테크길2	-	w-2	16-6	-	증)10	10	-	-	-	-	-	-	신규	
	테크길3	-	w-3	16	-	증)462	462	-	-	-	-	-	-	신규	
소계	-	-	-	-	증)1,007	1,007	-	-	-	-	-	-			
녹 지	-	-	-	66,170	증)601	66,771	-	-	-	-	-	-			

3. 공람장소 : 정선군청 도시과, 정선읍사무소
4. 공람기간 : 공고한 다음날부터 14일간(2019. 12. 11 ~ 12. 26)
5.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정선군청 도시과 및 정선읍사무소로 서면제출
6. 관련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와 정선읍사무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과(033-560-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군관리계획(모평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 공고 열람자 의견서**

공 랫 건 명	정선 군관리계획(모평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접수번호	
			접 수 일	2019. . .
공 랫 인 인 적 사 항	주 소			
	성 명			
	연 락 처			
토 지 소 재 지	위 치			
	면 적			
	기 타 사 항			
공 랫 의 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따라 열람·공고한 “정선 군관리계획(모평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인)

정 선 군 수 귀 하

정선군 공고 제2019 - 1313호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스마트폰이 대중화됨에 따라 지방세 고지서를 모바일 송달(발송) 확대시행에 따라 세액공제 범위 확대로 혜택 제공

2. 주요내용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10조)
  - 전자고지, 자동이체 : 고지서 1장당 150원 → 고지서 1장당 500원
  - 전자고지 + 자동이체 모두 신청 : 고지서 1장당 300원 → 고지서 1장당 1,000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우)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세무과
- 전 화 : 033 - 560-2288
- 팩 스 : 033-560-2587
- 이메일 : wil@korea.kr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000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p> <p>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u>150원</u></p> <p>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u>300원</u></p> <p>② (생략)</p>	<p>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 1 . ----- ----- ----- --- <u>500원</u> 2 . ----- ----- ----- ----- <u>1,000원</u></p> <p>②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19. 1. 1.] [법률 제15295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참고1

## 강원도 시·군별 공제(감면) 조례현황

(단위:원)

시·군별	전자송달	자동이체	전자송달+자동이체
춘천시	150	150	300
원주시	150	150	300
강릉시	150	150	300
동해시	150	150	300
태백시	150	150	300
속초시	150	150	300
삼척시	150	150	300
홍천군	150	150	300
횡성군	150	150	300
영월군	150	150	300
평창군	500	500	1,000
정선군	150	150	300
철원군	150	150	300
화천군	150	150	300
양구군	150	150	300
인제군	150	150	300
고성군	150	150	300
양양군	150	150	300